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영 광 군 수

1. 조 례 명 :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2. 제정이유

-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인의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환경오염행위 적용범위

- 영광군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나. 신고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신고인은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

다. 환경오염행위 접수 및 처리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6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등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

라. 포상금의 지급 관한 사항(안 제5조)

-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규정
 -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3만 원 ~ 20만 원(고발 시 30만 원)
 -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대상 금액의 100분의 10
- 신고인 1명당 연간 보상금 지급 규정: 30만 원 까지
- 신고인 예금계좌로 포상금 입금 원칙
 - 5만 원 초과 포상금의 20% 이상을 은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또는 특산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

리.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신고인 인적사항 및 신고와 관련된 사항 보호

마. 예산의 확보 관한 사항(안 제8조)

-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

4.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정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3. 4. 12. ~ 5. 1.(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화, 직접방문

- 1) 전자우편(e-mail) : ssooin@korea.kr
- 2) 주소: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 3) 전화: 061-350-5378, FAX: 350-591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350-53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영광군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 하여 모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누구든지 영광군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군수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행위가 신고내용만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 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단체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리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법원에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5.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생활폐기물의 투기 또는 소각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포상금은 1명당 연간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이나 영광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군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300,000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200,000원	
벌 금 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선고유예		150,000원	
기소유예		100,000원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200,000원 (3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100,000원 (20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30,000원

주)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20만원(고발 병행 시 30만원), 최저 3만 원

<별지 제1호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 지급액 (지급 일자)	비고 (행정 처분 등)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 일자	조사결과	회신 일자		

주) 신고방법은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